

의 정 정 보

2006 - 9

9. 27

- ◆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, 본 사례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.
- ◆ 본 사례는 추석을 맞이하여 의원님께서 위반하기 쉬운 위법 사례로서 본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·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
추석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

추석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

1.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·음식물 제공행위

가. 의례적인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추석을 맞이하여 친척·은사를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
- 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(「지방자치법」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·단체·시설의 직원 제외)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-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·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
- 읍·면·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 행사,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(부상을 제외함)을 수여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, 시민위안잔치, 경로잔치, 주민 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·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·미용 협회 등 직능단체,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·음식물,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※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·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·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·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
-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·물품·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나. 구호적·자선적 행위

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.

할 수 있는 사례

-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※ 경로당, 노인회관,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(장애인복지시설)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 제외)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※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

할 수 없는 사례

- 불우이웃돕기·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·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·대합실 등에서 다과·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

다. 직무상·업무상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”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,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
※ 다만,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.
-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”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‘지역문화제·지역민속축제·생태자연축제’ 등을 개최하는 행위
-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·자선행위
-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·효부·모범시민·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안의 환경미화원·구두미화원·가두신문판매원·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·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·선물을 제공하는 행위

-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·단체·시설·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·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각급기관·단체·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라. 정당활동 관련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

-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 - ※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(통·리와 자연부락의 남·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)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금지됨.
-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·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·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·선물·기념품·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

2.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

할 수 있는 사례

- 추석인사·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·기관·단체·시설이 그 명의 (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)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
-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, E-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
 - ※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-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

할 수 없는 사례

-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·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·성명이 게재된 현수막·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·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
- 신문, 방송, 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·입후보예정자의 성명·사진·경력·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
-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
- 각종 단체·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

-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행위

-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·학부모,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·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